

[별표 19]

자동차보험 심사기준(제5-19조관련)

심사항목	비고
<p>1. 보험업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</p> <p>가. 보험업법, 상법, 소비자기본법,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되는지 여부</p> <p>나. 약관작성원칙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표준약관에서 정하는 내용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성하였는지 여부</p>	
<p>2. 정당한 사유 없는 보험계약자의 권리 축소 또는 의무 확대 등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</p> <p>가. 보험상품 및 급부의 특징 또는 보장내용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계약자가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지 여부</p> <p>나. 보험사고의 입증에 어렵거나 보험사고의 입증을 위하여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초래하는 위험에 대한 급부의 설계 및 조건을 제시하는지 여부</p> <p>다. 보험금 지급기준 및 한도액이 적정한지 여부</p> <p>라.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 극단적인 한정 및 조건이 있는지 여부</p> <p>마. 계약후 보험금 및 보험료 등이 변동하는지 여부</p> <p>바. 계약후 보험회사의 계약내용 변경권이 있는지 여부</p> <p>사. 기타 계약자가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</p> <p>아.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가입대상 및 판매채널을 특화하였는지 여부</p> <p>자. 위험 이외의 요소로 특정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선택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</p> <p>차. 종교, 인종,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유무를 이유로 보험요율 적용상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</p> <p>카.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인수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여부</p> <p>타. 보험료 납입방법이 계약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</p> <p>파. 계약자의 권리·의무와 관련된 사항 등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약관에 명기하였는지 여부</p> <p>하.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보험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경우 향후 법률 개정 등으로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거나 변동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이전 여부 및 환급금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는지 여부</p>	
<p>3. 보험료, 책임준비금 및 해약환급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·적립할 것</p> <p>가. 기본통계의 종류</p> <p>(1) 기초 손해상황 자료가 있어야 한다.</p> <p>- 조정구분단위별 최소 1년 이상의 최근 자료를 원칙으로 한다.</p> <p>(2) 사고빈도, 심도 또는 순보험료 추이자료가 있어야 한다.</p> <p>- 최근으로부터 최소 5년간의 제도변경에 따른 On-Level된 평균자료</p> <p>(3) 할인할증 등 제적용률 추이자료가 있어야 한다.</p> <p>- 현행 또는 향후기준으로 최근으로부터 최소 5년간의 평균자료</p> <p>(4) LDF통계가 있어야 한다.</p> <p>- CLM 방법의 경우 : 지급보험금 및 손해액 자료(최소 5년)</p> <p>- APM 및 BFM경우: 지급보험금 및 손해액, 사고건수 및 평대 자료(최소 5년)</p>	

심사항목	비고
<p>(5) 제적용률 평균율자료가 있어야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순보험료법에서는 보험종목/담보/차종별 모든 변수에 대한 평균율이 산출되어야 하나, 손해율법에서는 제적용률 추세가 반영되는 변수에 대한 경우만 평균율 산출 <p>(6) 요율조정 및 제도개선(효과)의 정리된 History가 있어야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거 5년 이상의 요율조정, 보험금지급기준 변경, 보상한도확대 등 보험료 및 보험금에 영향을 주었던 구체적 자료 <p>(7) 요율상대도 산출통계가 있어야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요소간 상호관계와 관련된 기초 손해상황 자료 	
<p>나. 손해상황자료의 적정성</p> <p>(1) 보험종목별 전체 손해상황이 적정하여야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추출통계자료(AY)와 업무보고서자료를 비교하는 경우, 계약자료는 98% 이상 일치하여야 하고, 사고자료의 경우 CY자료이면 98% 이상, AY자료이면 95% 이상 일치하여야 함(이 경우 준비금의 흐름을 감안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) <p>(2) 담보별 손해상황은 적정하여야 한다.</p> <p>(3) 차종별 손해상황은 적정하여야 한다.</p>	
<p>다. 통계추출기준과 산출목적간 적정성</p> <p>(1) 기초손해상황에 AY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요율산출 통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AY(Accident Year) 기준으로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- 다만, 제도의 변경 등 상황변화로 AY의 요율 산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 위험도를 반영할 수 있는 최적의 방식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. <p>(2) 사고 빈도, 심도 또는 순보험료 추이자료와 기초통계자료의 일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</p> <p>(3) 일반물건 요율은 일반물건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반물건요율의 요율산출은 해당기준의 통계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일반물건과 공동물건의 합계통계를 사용하는 경우 일반물건과 공동물건의 상대도 통계로 일반물건과 공동물건요율을 차등화 할 수 있다. 	
<p>라. LDF계산의 적정성</p> <p>(1) LDF 계산방식은 적정하게 사용되어야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CLM, APM, BFM의 어떤 방식을 사용하여도 된다. 그러나 이외의 별도의 방식을 사용할 경우 해당방식이 실무적으로 적정한지에 대한 검증자료가 필요하다. <p>(2) 모든 담보에 대하여 LDF를 적용할 수 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모든 담보에 적용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며, 대인배상에 대하여는 반드시 LDF를 적용하여야 한다. <p>(3) 통계기간은 5년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인배상은 5년이상으로 하여야 하며, 기타 담보는 그 이하도 가능하다. <p>(4) 통계흐름상 적절한 진전추이 계수를 선택하여야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평균, 최근추이방식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전추이 계수를 선택할 수 있다. <p>(5) 물가지수 및 이자율을 감안하지 않고 LDF를 계산하여야 한다.</p> <p>(6) 보험회사별 통계특성(예 사고심도, 종결률 등)을 반영할 수 있다.</p> <p>(7) 지급보험금 방식 또는 손해액방식을 각각 사용하거나 혼합하여 LDF를 계산할 수 있다.</p>	

심사항목	비고
<p>(8) 손해액 진전계수 계산방법의 적용은 통계의 속성에 따라 위험집단을 달리할 수 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인배상의 경우 보상한도 확대 등 보험금에 영향을 주는 요소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통계기간을 구분할 수 있다. - 진전추이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기간을 분기별 또는 월별로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. - 인적사고의 경우 중상사고와 경상사고로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. - 물적사고의 경우 대형사고와 중소형사고 등으로 위험도의 성격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. 	
<p>마. 기초통계의 보험산출통계로 전환</p> <p>(1) LDF의 적용은 적정하여야 한다.</p> <p>(2)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차종의 경우 신뢰성확보를 위하여 적정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.</p>	
<p>바. On-Level방법</p> <p>(1) 보험료 인상 또는 인하효과를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.</p> <p>(2) 보상한도 확대효과를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.</p> <p>(3) 지급기준 변경효과를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.</p> <p>(4) 사고빈도, 심도, 지급보험금, 손해액의 On-Level은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.</p> <p>(5) 제적용률 추이의 On-Level은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적용률 추이는 향후 적용될 제적용률 기준으로 On-Level된 자료를 이용하여야 함. <p>(6) On-Level 방법은 도식에 의한 방법과 전산을 통한 방법이 있으며, 어느 방법을 사용하여도 가능하다. 다만 전산에 의한 방법은 도식에 의한 방법으로 그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산에 의한 자료변환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표본 보험종목/담보/차종의 전산계산결과와 도식에 의한 결과의 일치여부 확인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, 기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. 	
<p>사. 각종 추세예측</p> <p>(1) 추세 예측방법은 회귀분석, 시계열분석 방법을 기본으로 하나 향후 예상되는 상황이 적정히 반영되는 다른 방법도 가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추세결정시 통계추이와 다소 다르게 요율산출자의 임의적 결정이 반영되는 경우에도 통계추이하에서 반영되어야 함 - 추이결정시 요율산출자가 가감한 임의성은 충분한 이유가 뒷받침될 때 인정될 수 있음 - 추세의 결정을 위한 예측방법 및 판단기준은 일관성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적정한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음 <p>(2) 사고빈도, 심도 또는 순보험료 예측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.</p> <p>(3) 제적용률의 예측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.</p> <p>(4) 예측추이 결정시 적용기간을 적정하게 감안하여야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예측계수 적용은 1) 계약자료의 경우 향후 보험료가 적용되는 기간이 1년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결정하고 2) 사고자료는 향후 보험금 지급기간이 2년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결정 <p>(5) 지수함수 등에 의한 회귀분석을 시행한 경우에는 결정계수를 확인하여야 한다.</p>	

심사항목	비고
<p>아. 위험상대도 산출</p> <p>(1) 다변량 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다변량 분석과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변량으로 산출할 수 있다.</p> <p>(2) 위험집단구분은 위험도에 부합되도록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.</p> <p>(3) 위험상대도 결정후 Off-Balance의 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. - Off-Balance 계산은 On-Level된 경과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.</p>	
<p>자. 보험료 산출과정</p> <p>(1) 보험료 산출 과정(Logic)이 적정하여야 한다. - 보험료산출과정은 기초통계 정리 → 보험통계정리 → 자료의 On-Level → 각종 추이적용 → 조정요인산출 → 신뢰도 반영 → 최종보험료 산출(순보험료의 경우 사업비율을 감안 영업보험료로 환산, 각종 Off-Balance 조정요인 적용)</p> <p>(2) 위험변화요인 등을 고려하여 위험률을 할증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합리적이어야 한다.</p>	
<p>차. 기타사항</p> <p>(1) 보험료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요율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. - 보험료 역전현상은 차종, 용도, 담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음 - 위험등급 그룹 간 보험료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적을 합산하여 조정된 보험요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,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정한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음. 다만 역전현상을 조정하더라도 전체적인 보험료 수준 또는 손해를 수준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함</p> <p>(2) 교통법규 위반경력 평가의 대상항목 및 대상기간 등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그 기준 등이 보험업법 제129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9절 등 보험요율 산출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</p> <p>(3) 약관과 요율과 인과관계는 적정하여야 한다.</p>	
<p>카. 책임준비금에 관한 사항</p> <p>- 보험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재원의 확보와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임준비금이 결정되었는지 여부</p>	
<p>4.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 겸영 제한에 위배되지 않을 것</p>	
<p>5.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,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</p>	